

조례제정(안)

1. 경기도 조례안을 기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문작성
2. 지원내용등은 피해자들이나 단체의 필요사항등을 조문화할필요
3. 규칙에 들어갈 주요내용도 함께 검토하여야함

조 례 안	설 명 자 료
<p>명칭: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평택시내 미군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미군위안부의 복지향상과 인권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조례(안) 과 동일 ○ 위안부라는 명칭은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957.2.28) 제 4조 3항에 명시적으로 적시된 용어로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 ○ 미군위안부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기지촌 정책들을 볼 때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제는 미군 위안부문제를 드러내는 적극성이 필요있다고 판단됨 ○ 1961년11월 윤락행위방지법이 공포되었으나 1962년6월 정부는 104개의 매매춘특별구역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정부의 입장이 매매춘금지에서 규제로 바뀌었으며 특별구역의 수는 증가하여 1964년에는 145개소까지 확산됨(책-동맥속의 섹스 73P) ○ 성인지적 역사인식..의 문구 삭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위안부”란 국적에 관계없이 평택시내 미군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미군기지촌”이란 미군이 주둔하였거나 주둔하고있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주류판매·유흥및接客행위등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밀집된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군위안부의 실태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기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협조하여야한다

○ 미군위안부로 확정된 경우에도 미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대상자를 구제하기위하여 ‘국적에 관계없이’라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 미군기지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또 특정해야할 실익도 없고 경기도 조례안처럼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된 지역’ 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마치 성매매 우범지역인 양 비추어 지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략적으로만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4조(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 ① 미군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군위안부의 심사·결정에 관한사항
2. 미군위안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군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및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전에 관한사항
4. 미군위안부의 인권보장및 명예회복에 필요한사항
5.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의 지정과 위탁운영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에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됨(규칙으로 위임)

○ 성인지적 역사인식정립교육, 자녀생활실태조사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

6. 그밖에 미군위안부 명예회복과 주거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관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선정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기관을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택시 소재 미군기지촌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계속 1년이상 평택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사람으로 한다

○ 경기도조례제6조 실무위원회 삭제

○ 경기도조례안은 지원대상자 조항에 무국적자에 대한 지원 언급이 없어 제2조 정의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미군 위안부를 정의한 목적과 배치된다

○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있는사람이라는 조항은 검토대상임

제8조(지원내용) ① 제6조의 지원기관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아니한다

1. 단체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2. 회원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및 자료집발간에 필요한 경비

②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대한 지원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아니한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지원
3.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미군위안부의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 위탁단체에 대한 운영비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있음

○경기도조례안의 제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여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담당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는 이 지원내용의 대상과 범위가 예측이 불가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소요예산의 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조례제정 을 기피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적정내용과 금액을 명문화해야함

○국회예산정책처가 근거없이 기지촌여성의규모를 23만 명, 피해자를 13만명으로추산하고 보상액을 4천억으로

6. 그 밖에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심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

추산하는 등 예산만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경우를 참고(햇살소식지16호)해야 할 것임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지원금액 등을 시장이 임의로 정하는 규칙으로 미룰 경우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 승인권을 가진 시 의회가 소요예산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구체적 지원규모나 기준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개인은 물론이지만 운영단체에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항목과 규모를 정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단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자칫 자발적 후원이 줄어들 수 있고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열릴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기타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있다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기위하여 당사자, 증인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등을 할수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대상자신청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재심의) ①제8조에 의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요청할수있다

② 재심의 심사결정및 통지는 제9조3항의규정에따른다

○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법적 증빙자료인데 소송에 의해 승소한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규칙에 답을 조문을 만들어야한다

○ 신청서 양식 구상

○ 규칙에 명문화할 기타관계인의 정의 역시 고민필요
기타관계인이 필요없을 경우 본문 삭제

제11조(지원중지및 환수등) ① 다음각호의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경우
2. 전출,사망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경우

②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들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할수있다

제12조(권리의보호) 제7조2항의 지원금을 받을권리는 영도또는 담보로제공하거나 압류할수없다

○ 타법률에서 정한 권리의제한이나 금지조항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굳이 명시적으로 명문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

○ 경기도조례안13조의 명예회복및 지원사업은 추후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도 될사항으로 초기에는 조례제정을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함

제13조(비밀보장) 미군위안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조례안제14조 민간단체등 지원은 제7조에 명문화